



환율 및 수출금융 분야 정책설명회

중소벤처기업부/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| 기술보증기금 | 무역보험공사 | 수출입은행 | 기업은행



1

**최근
환율 동향 및
지원방향**

2

**사업별
지원내용**



2009년 금융위기 이후 원·달러 환율 최고치 갱신



- 전세계 달러화 강제 등에 따라 '09.3월 이후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

'09.3.16.	→	'24.12.31.	→	'25.1.2.
1,488.0원		1,477.0원		1,466.6원

- '24.12.27(금) 장중 원/달러 환율은 1486.7원까지 상승하는 등 원화 가치 변동은 심화되는 중



수익성 악화

수입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제조원가 증가

→ 제품 가격에 반영됨에 따른 수익성 감소, 수출가격 책정 애로

자금 부담 증가

환위험 리스크 상승, 외환 결제 비용 증가에 따른 자금 부담 증가

→ 환차손에 따른 운영자금 부족

해외진출 기업의 비용 증가

해외 현지에 진출한 기업은 임금, 원자재, 운영비용 등 증가

→ 경영 부담 발생

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, 유동성 부족 등에 따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 강화



1. 최근 환율 동향 및 지원방향

高환율 피해기업
유동성 공급 강화

- 高환율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(2,500억원) 및 기보 긴급경영안정보증(3,000억원) 집중 지원

원·부자재 수입기업
부담 경감

- 조달청 원자재 대여 담보우대보증(기보)
- 원하청 기업간 환율변동을 반영한 납품대금 연동계약 기준 확산

수출기업 유동성 공급

- 수출기업 정책자금 확대
 - * '24년 중진공 0.2조원, 기보 0.5조원
 - '25년 중진공 0.4조원, 기보 0.5조원
- 수출촉진자금대출(수은)
- 수출신용보증(무보)
- 수출플러스보증부대출(기업은행)

해외투자·진출기업
자금 지원 확대

- 해외법인 설립기업 대상 정책자금 지원 신규 추진(중진공)
- 해외진출 기업 보증 지원(기보)
 - * '24년 100억원 → '25년 300억원

환헷지 프로그램 지원

- 환변동보험(무보), 통화전환옵션(수은), 선물환, 환위험관리 컨설팅(기업은행)
- 수출bauer 활용 무역보험·보증 가입 지원(중진공)



1 긴급경영안정자금

재해 피해기업 및 환율피해 등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긴급한 자금 수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

- [자금용도] 재해피해 복구 및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에 소요되는 운전자금

구분	용자조건
용자방식	직접대출
용자한도	(운전) 연간 10억원 이내 (3년간 15억원 이내)
용자기간	(운전) 5년 (2년 거치)
용자금리	(운전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+ 0.5%p * 재해중소기업은 연 1.9% 고정금리

- [지원방향] 재해피해 발생 및 일시적 경영애로에 따른 피해가 확인되는 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여 경영 정상화에 기여
 - 高환율에 따른 생산활동 위축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에 환리스크 대응을 위한 유동성을 집중 공급

지원 대상
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

지원 규모

2,500억원

신청·접수

'25.1월 ~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

문의처

- 중진공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-3655
- 중진공 누리집 (www.kosmes.or.kr)



2 ▶ 신시장진출지원자금

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·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 육성

- [자금용도] 수출품 생산 설비도입 및 생산 운전자금 등

구분	용자조건	
	내수기업 수출기업화	수출기업 글로벌화
용자방식	직접대출	직접대출, 이차보전
용자한도	연간 5억원	(직접대출) 30억원 (운전 10억원) * 이차보전 연간 5억원
용자기간	(운전) 5년 이내 (2년 거치)	(시설) 10년 이내 (담보 : 4년 거치, 신용 : 3년 거치) (운전) 5년 이내 (2년 거치) * 이차보전은 3년 만기 일시상환
용자금리	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또는 고정금리	(직접대출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* 이차보전을 최대 3%

- [지원방향] 수출실적을 보유한 수출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구축에 기여
 - 수출기업 중 환율급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증가 등 운영자금 소요 기업에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유동성을 집중 공급

지원 대상
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 1년 수출 10만불 미만(내수기업 수출기업화) 또는 수출 10만불 이상(수출기업 글로벌화) 기업

* 「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

지원 규모

'25년 용자 3,825억원
* 이차보전 2,000억원 별도

신청·접수

'25.1월 ~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

문의처

- 중진공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-3655
- 중진공 누리집 (www.kosmes.or.kr)



3 수출바우처 - 무역보험보증 서비스

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디자인개발, 전시회, 통·번역 등 14개 분야 서비스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

- **[사업내용]** 디자인 개발, 홍보, 특허·지재권, 무역보험·보증 등 해외진출 시 필요한 14개 서비스 분야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
 - * 수출규모별 내수, 초보, 유망, 성장, 강소단계로 구분하여 국고보조한도 30~100백만원까지 지원(보조율 50~70%)
- **[보험·보증]** 14개 메뉴판 중 '무역보험·보증' 서비스를 통해 단기 수출보험, 수출신용보증, 환변동보험 등을 1천만원 한도 내 지원
 - 단기수출보험 : 참여기업이 수출물품 선적 후,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
 - 수출신용보증 : 참여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물품 제조, 조달 등에 필요한 자금 등을 대출받는 경우 무역보험공사에서 연대보증
 - 환변동보험 :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하여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회수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익 제거

지원 대상
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지원 규모

1,275.6억원

신청·접수

- (1차) '25.1.7~1.23
- (2차) '25.5월(예정)
- 수출바우처 누리집
(www.exportvoucher.com)

문의처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수출바우처 안내센터
(055-752-8580)



2. 사업별 지원 내용

4 긴급경영안정보증

고환율 등 대외·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영향을 받는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방안 마련

지원 대상

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
구분	Track1(지역산업위기기업)	Track2(일시적 경영애로기업)
대상 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·중견기업 등 대규모 납품처의 경영난 등에 따라 직·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① 기업회생 신청·서비스 중단 이커머스*와 '24년 거래실적을 보유 직·간접 피해기업 * 티몬, 위메프, 인터파크쇼핑, AK몰, 알렛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외·경제환경 변화로 일시적 경영애로가 발생한 아래 기업 ①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우려 기업 ②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우려 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환율 등 복합위기 피해 수입·수출 기업 * (수입) 당기매입액 대비 원자재 수입액 20% 이상 (수출) 당기매출액 대비 수출금액 20% 이상 ③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기업 ④ 기보가 인정한 지원 필요기업

- Track1(지역산업위기기업) : (기존보증) 원칙적으로 1년 전액 만기연장 (신규보증) 보증비율 : 100%, 보증료율 0.3%p 감면
- Track2(일시적 경영애로기업) : 보증비율 : 90% 부분보증, 보증료율 0.3%p 감면

지원 규모

3,000억원

신청·접수

연중 상시

문의처

-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(1544-1120)
-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(www.kibo.or.kr)



5 조달청 원자재 대여 담보어음보증

기업의 조달청과 체결한 원자재 대여 등 상거래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지원

- **[대상채무]** : 기업이 조달청과의 계약에 따라 재화 등(용역거래포함)을 구매·대여함으로써 조달청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
- **[보증종류]** : 담보어음보증
- **[보증상대처]** : 조달청
- **[보증기간]** : 최장 1년 이내로 하되, 물품공급계약서 상 대여기간 만료일
- **[우대사항]** : 보증비율(95% ↑), 보증료율 감면(0.3%p) 등 기업 요건에 따라 가장 최적화된 보증우대 적용

지원 대상

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

신청·접수

연중 상시

문의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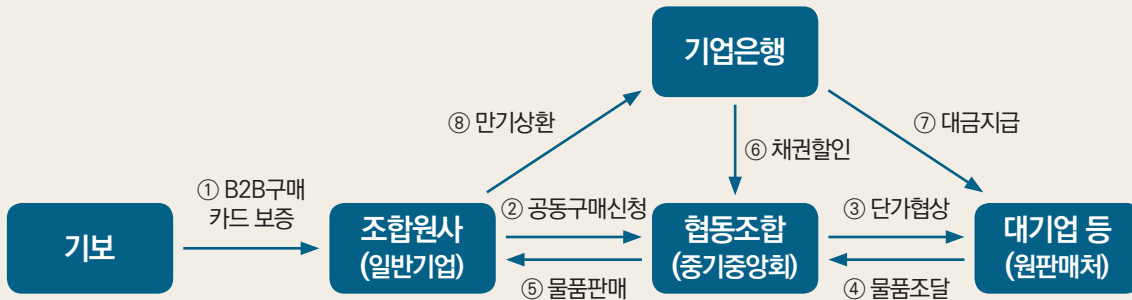
-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(1544-1120)
-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(www.kibo.or.kr)



6 중소기업 원·부자재 공동구매 협약보증

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은행이 기금에 특별출연하고, 기술보증기금은 원부자재 공동구매자금에 대해 우대보증 지원

- **[대상채무]** : 중소기업이 협동조합 및 중기중앙회에 원·부자재 또는 상품의 공동구매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담하는 금전채무(근보증)
- **[기본구조]** : 협동조합이 공동구매(조달) 주체이자 판매처 역할 수행
 - *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중소기업이 신청시 중기중앙회가 공동구매 주체가 됨



- **[운영방식]** : 기업은행의 “B2B구매카드 대출 ” 로 운용
- **[우대사항]** : 보증비율 95%, 보증료 0.5%p 감면, 금리 1.0%p 감면

지원 대상

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신청·접수

연중 상시

문의처

-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(1544-1120)
-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(www.kibo.or.kr)



2. 사업별 지원 내용

7 수출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확대

혁신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여 수출잠재력 확충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모

지원 대상

신기술사업을 영위하면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
지원대상	요건
수출예상기업	• 향후 수출 발생 예상(수출계약서 등 보유) 또는 수출실적 비율 10%미만
수출실적기업	• 수출실적 비율 10%이상
수출주력기업	• 수출실적 비율 30%이상 또는 수출실적 1백만불 이상
수출우수기업	• 수출실적 5백만불 이상
수출선정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출예상·실적·주력·우수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 등의 다음 수출지원사업 선정기업 - (중기부) '수출바우처 사업', '브랜드K', '무명의 수출용사', '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' - (조달청) 'G-PASS 기업' - (KOTRA) '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', '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' - (중진공) '온라인 수출패키지 사업 참여기업' - (기금) '수출다변화 성공기업'

지원 규모

5,000억원

신청·접수

연중 상시

문의처

-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(1544-1120)
-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(www.kibo.or.kr)

- 지원대상에 따라 우대사항 차등 적용하여 수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

지원대상	보증료율	보증비율
수출예상기업	△0.2%p	95%
수출실적기업	△0.2%p	90%
수출주력기업	△0.3%p	90%
수출우수기업	△0.4%p	95%
수출선정기업	△0.3~0.4%p	90~95%



8 해외진출 기업 보증 지원

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이를 통한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

- **[운용방식]** : 해외투자자금보증과 해외사업자금보증으로 구성
 - (해외투자자금보증) 국내지배기업이 현지법인의 '주식등'*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기보가 보증(대출보증)
 - * ① 외국기업 지분 취득자금 ② 해외종속기업에 1년 초과 장기자금 대여
 - (해외사업자금보증) 해외법인이 현지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국내기업의 주거래은행이 지급보증(Stand-by L/C)을 하고 그 지급보증에 대해 기보가 보증 (지급보증의 보증)
- **[보증심사]** : 피보증인인 국내지배기업을 기준으로 심사
 - * 해외종속기업은 실제 파악이 가능한 신용조사서(나이스디앤비, 한국기업데이터, 나이스평가정보, 이크레더블 등의 해외기업 신용조사서)를 활용

지원 대상

다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
- ① 국내지배기업(법인 또는 개인기업) : 신기술사업자
- ② 해외종속기업(법인기업) : 국내지배기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(예정) 기업

지원 규모

300억원

신청·접수

연중 상시

문의처

-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(1544-1120)
-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(www.kibo.or.kr)



9 환변동보험

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,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(Hedge)하는 제도

● 환변동보험 상품별 안내(수출 기준)

구분	내용
일반형*	• 환율 하락시 손실을 보상, 환율 상승시 이익금 납부
완전보장 옵션형	•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금 납부 의무 면제, 환율 하락시 하락분 전액 보상
부분보장 옵션형	•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금 납부 의무 면제, 환율 하락시 일정 수준까지 보상

*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해 '25.6월말까지 보험료 30% 추가 할인

지원 대상

중소·중견기업

대상통화

USD, JPY, EUR, CNY(일반형 기준)

신청·접수

연중 상시

문의처

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:
1588-3884



10 수출신용보증(선적전)

수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품 제조 등에 필요한 무역금융 및 기타 수출자금을 대출받을 때 무역보험공사가 수출기업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보증서를 발급하는 서비스

● 주요 계약사항

구분	내용
보증계약자	금융기관 및 수출유관기관
보증하는 채무	대출원금 및 보증채무 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
보증비율	90% 이내
보증기간	1년 이내
보증약정	KSURE와 수출기업간 권리·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,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서명

지원 대상

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

신청제한조건

K-SURE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, 보증제한 및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

신청·접수

연중 상시

문의처

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: 1588-3884



11 수출신용보증(포괄매입)

수출기업이 수입자 제한 없이 수출이행서류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외환 대출을 받은 후, 대출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가 은행에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

● 주요 계약사항

구분	내용
보증계약자	금융기관
담보위험	수출기업의 대출금 미상환 위험
대상거래	모든 수입자와의 대출기간 180일 이내 무신용장 일반수출거래
보증비율	(단, 대출실행일은 수출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)
보증약정	90%이내
단기수출보험 가입 의무	주채무자(수출기업)와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
수출기업의	연계 가입 선택
수출통지/매입통지 의무	없음
보증서 효력	보증기간 중 대상거래 전체
보증료	연 1회 선납

지원 대상

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

신청제한조건

K-SURE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, 보증제한 및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

신청·접수

연중 상시

문의처

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: 1588-3884



12 통화전환옵션

외화 결제 수요가 많은 기업의 경우 매출자산과 부채 항목의 조정(matching) 및 환변동위험 헤지(hedge)를 통한 환위험관리

- 대상 통화 : 원화 및 외화(미달러화, 엔화, 유로화)
- 전환횟수 : 대출기간 중 2회
- 전환가능기간 : 대출만기일 1개월 전까지
- 수수료 : 무료
- 전환 후 금리 : 통화전환신청 접수일의 해당통화에 적용되는 대출금리
- 전환 후 환율 : 통화전환신청 접수일의 매매기준율

지원 대상

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성장자금 및 수출이행자금을 이용하는 중소·중견기업 중 여신 취급시 해당 특약을 신청한 기업

신청·접수

대출 신청시

문의처

한국수출입은행 거래중인 대출 담당자 앞 문의



13 수출촉진자금대출

지원 대상

수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

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, 기술개발, 해외시장 개척활동자금 및 수출기업 인수 등 지원

● 대출기간

- 시설투자 :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5년 이내
- 기술개발, 수출기업인수, 제작자금, 지식재산권 구입 :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
- 그 외의 경우 : 3년 이내

● 대출한도

- 실소요자금의 90% 이내
- 수출기업인수 용도는 실소요자금의 50% 이내
- 협조대출인 경우 실소요자금의 40% 이내

문의처

- 중소기업금융1부 (섬유·의류, 석유화학, 제지 등) : 02-6252-3436
- 중소기업금융2부 (음식료, 자동차부품, 전기전자 등) : 02-6252-3468



14 수출성장자금대출

수출실적을 보유한 국내기업이 물품 등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일괄 지원

● 대출기간

-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6개월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

● 대출한도

- 대출기간 6개월 : 수출실적의 90% 이내
- 대출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 : 수출실적의 70% 이내
- 단, 기업별 대출한도는 350억원 이내이며, 수출규모 등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가능

지원 대상

지원대상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중소·중견기업

문의처

- 중소중견금융1부
(섬유·의류, 석유화학, 제지 등) :
02-6252-3436
- 중소중견금융2부
(음식료, 자동차부품, 전기전자 등) :
02-6252-3468



15 수출이행자금대출

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물의 제작이행 및 대금회수 시까지 필요한 자금을 지원

● 대출기간

-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최종 수출대금 결제기일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

● 대출한도

- (수출계약금액-기수령금액)×90% 이내에서 생산 또는 수출에 필요한 금액
- 단, 서비스산업 중 러닝로열티방식 판권수출계약의 경우, 순제작비(총제작비-홍보비용 등)의 50% 이내

지원 대상

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 또는 생산(해외건설공사 제외)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국내 중소기업

문의처

- 중소기업금융1부 (섬유·의류, 석유화학, 제지 등) : 02-6252-3436
- 중소기업금융2부 (음식료, 자동차부품, 전기전자 등) : 02-6252-3468



16 선물환

사전 환율 확정을 통해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 완화

- 예상 수출입 시기에 맞춰 선제적으로 환율을 확정하고 거래 만기 당일 환율과 관계없이 미리 확인한 환율로 환전
 -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 시스템(IBK FXON)을 통해 거래 가능

지원 대상
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지원 규모

제한없음

신청·접수

연중 수시, IBK기업은행
각 영업점

문의처

기업은행 고객센터 1588-2588



17 환위험관리 컨설팅

환율 변동에 취약한 중소 수출입기업의 환위험관리 지원

- 수출입기업의 외환 관리 및 결제 상황 등을 상담하여 환위험 진단 후 기업에 적합한 환위험관리 솔루션 제공
 - 방문 또는 비대면(ZOOM) 방식으로 1:1 맞춤형 컨설팅 진행

지원 대상
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신청·접수

연중 수시, IBK기업은행
각 영업점

문의처

기업은행 고객센터
1588-2588



18 수출 플러스 보증부대출

수출기업 및 수출 선도기업 지원, 성장단계별 수출기업의 유동성 지원

- **운전자금 지원** (당행 대환대출 불가)
 - 동일기업당 최대 5억원
 - 최대 연 1.5%p 금리감면/보증비율 90% 및 최대 3년간 보증료 0.2% 감면
- **대출기간** : 신용보증서 만기일 이내
- **상환방법** : 만기일시상환, 원(리)금균등분할상환
- **이자부과시기** : 고객이 지정한 대출기일(또는 대출취급일 응당일) 기준, 매월 응당일에 납입
- **부대비용** : 인지세, 보증료 및 중도상환해약금
- **연체이자율** :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%p를 더하여 적용 (최고연체이자율은 가계 및 중소기업 연 11%, 그 외 13%)

지원 대상

내수/수출초보/수출유망 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관련 보증서* 보유 중소기업

* 「수출기업 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」에 따른 신용보증서

지원 규모

1,500억원(보증규모 기준, 보증비율 90%)

신청·접수

연중 수시,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

문의처

기업은행 고객센터
1588-2588



19 무역금융

물품 및 용역의 수출과정에 필요한 원자재 조달·제조·가공 또는 완제품 국내구매에 필요한 자금지원

- 용도별 지원(생산자금, 원자재자금, 완제품구매자금) / 포괄 지원
 - 현금 또는 내국신용장 개설
- 낮은 이율의 금융중개지원대출금리 적용
- **대출한도** : 기업신용평가 등급, 담보인정비율, 보증한도 등에 따라 상이
- **대출기간** : 생산/원자재자금/포괄금융 180일 이내, 완제품 구매자금 30일 이내. 신용장 기준의 경우 수출신용장 등의 유효기일 이내
- **상환방법** : 만기일시상환
- **이자부과시기** : 고객이 지정한 대출기일(또는 대출취급일 응당일) 기준, 매월 응당일에 납입
- **부대비용** : 인지세, 보증료
- **연체이자율** :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%p를 더하여 적용 (최고연체이자율은 가계 및 중소기업 연 11%, 그 외 13%)

지원 대상

직접 수출기업/간접 수출기업 (수출용 원자재, 완제품을 국내에 납품하는 기업)

지원 규모

제한없음

신청·접수

연중 수시, IBK기업은행
각 영업점

문의처

기업은행 고객센터
1588-2588



20 IBK강소기업대출

수출 분야에서 혁신성 및 성장 잠재력을 갖춘 우수기업을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

- 운전자금, 시설자금, 기업구매자금대출, 무역금융
- 최대 연 1.0%p 금리감면, 외환수수료(수출환어음 매입 환가료, 수입신용장 개설 수수료) 우대
- **대출기간** : 운전자금 1년, 시설자금 15년, 결제성자금 180일 이내.
무역금융의 경우, 생산/원자재자금/포괄금융 180일 이내, 완제품 구매자금 30일 이내 또는 수출신용장 등의 유효기일 이내
- **상환방법** : 만기일시상환, 원(리)금균등분할상환
- **이자부과시기** : 고객이 지정한 대출기일(또는 대출취급일 응당일) 기준, 매월 응당일에 납입
- **부대비용** : 인지세, 보증료 및 중도상환해약금
- **연체이자율** :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%p를 더하여 적용 (최고연체이자율은 가계 및 중소기업 연 11%, 그 외 13%)

지원 대상

USD 100만불 이상 수출기업
또는 외국인투자금액 USD
10만불 이상 외국인 투자기업

지원 규모

제한없음

신청·접수

연중 수시, IBK기업은행
각 영업점

문의처

기업은행 고객센터
1588-2588



21 ▶ 납품대금 연동제

중소 수탁기업들이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납품대금을 제대로 조정받을 수 있도록
납품대금연동제 도입

- **납품대금 연동제란** :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·공사·가공·수리 등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연동에 관한 사항(물품등의명칭, 주요 원재료, 조정요건, 기준지표, 산식 등)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
 - *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4호」
- **수위탁거래란** :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, 판매, 용역을 업(業)으로 하는 자가 물품, 부품, 반제품 및 원료 등(이하 “물품 등”)의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, 용역 또는 기술개발(이하 “제조”)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,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
 - * 단,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과 거래하는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수탁기업에 포함
- **적용대상 거래** :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·위탁거래
 - 주요 원재료란 납품대금에서 10%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
 - 납품대금이란 위탁기업이 물품등의제조등및 납품에 대한 대가로 수탁기업에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말함(부가가치세 포함)
 - * 1회 발주 금액이 아닌 1건의 계약당 총 납품대금이 기준
 - 원재료의 정의와 범위 : 물품등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재료로서 원료와 재료를 포괄하고 천연재료, 화학물, 가공물,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 단, 노무비와 경비는 제외됨



● 연동 약정 체결 의무의 예외

- 위탁기업이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
 - *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업종별 기준 이하인 기업
- 수탁·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
 - * 단,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
 - ** 1회 발주당 납품기간이나 계약 경과기간이 아닌 1건의 계약당 거래기간
-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
 - * 단,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
 - ** 1회 발주당 납품금액이 아닌 1건의 계약당 거래금액
-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
 - * 이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발표(23.9.11) 하였으며, 그 취지와 사유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

●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한 고회율 대응 방안 : 환율을 반영한 기준 지표 설정

- 환율이 원재료 구매 대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를 원화표시 가격으로 설정하거나 고시환율을 명시하는 등 환율을 반영하는 구조로 설정하여 환율변동을 반영할 수 있음

● 연동약정 예시 : 계약 체결(5월)후 조정일(6월)이 도래한 경우

구분	전월 LME 평균(USD)	프리미엄(USD)	환율(원/USD)	전기동 고시가 (원)
기준시점(2024.4)	8,675.63	160	1,343.68	11,872,000
비교시점(2024.5)	9,482.43	160	1,381.18	13,318,000

* 백원 단위 반올림



2. 사업별 지원 내용

납품대금 연동표

구분	기재사항
1. 납품대금 연동 대상목적물등의 명칭	동 케이블(CC-001)
2. 납품대금등 연동 대상주요 원재료	동
3.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	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(전기동 고시가) ※ 전기동고시가(원) = [전월 LME 동평균가격(USD) + 프리미엄(USD)] × 환율(원/USD)
4. 원재료 가격의변동을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	기준시점: 조정일의 전전월 (평균) 비교시점: 조정일의 전월 (평균)
5. 조정요건	±10% 이상 변동
6. 조정주기	1개월
7. 조정일	매월 1일
8. 조정대금 반영일	매월 1일
9. 납품단가 연동 산식	조정될 납품단가(단위: 1개) =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× 동 중량(2kg) + 5,000원
9.1. 반영비율	100%
10. 기타 사항	



- (CASE1)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내 환율 반영

• 조정요건 충족여부 판단

* 전기동고시가(원) = [전월 LME 동평균가격(USD)+프리미엄(USD)] x 환율(원/USD)

기준시점(4월) 고시가 : [8,675.63(USD) + 160(USD)] x 1,343.68(원/USD) = 11,872,000원(백원단위 반올림)

비교시점(5월) 고시가 : [9,482.43(USD) + 160(USD)] x 1,381.18(원/USD) = 13,318,000원(백원단위 반올림)

•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변동률은 12.2%이므로 조정 요건인 ±10% 충족

{ (13,318,000 - 11,872,000) / 11,872,000 } x 100 = 12.2%

→ 납품단가 연동산식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

* 조정될 납품단가 =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x 동 중량(2kg) + 5천원

기준시점(4월) 납품단가 = 11,872천원/ton x 2kg + 5,000원 = 28,744원

비교시점(5월) 납품단가 = 13,318천원/ton x 2kg + 5,000원 = 31,636원

∴ 동 LME 고시가 및 환율 상승에 따라 31,636원- 28,744천원= 2,892원 증액 조정

- (CASE2)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내 환율 미반영

• 조정요건 충족여부 판단

* LME동 가격 = 전월 LME 평균(USD)

기준시점(4월) 고시가 : 8,675.63USD

비교시점(5월) 고시가 : 9,482.43USD

•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변동률은 9.3%이므로 조정 요건인 ±10% 미충족

{ (9,482.43 - 8,675.63) / 8,675.63 } x 100 = 9.3%

∴ 납품단가 조정 요건 불성립으로 납품단가 미조정



2. 사업별 지원 내용

●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

- (목적)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주요 원재료 비중 확인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
- (지원규모) 1,000개사 내외
- (지원대상) 『중소기업 기본법』상 중소기업
 - * 『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』에서 정한 위탁·수탁기업 또는 『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』에서 정한 원수급사업자
- (지원내용)

구분	지원 내용	대상	지원금액	지원규모
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	원가분석으로 납품대금 내 원재료(재료비)금액을 확인하여 10% 이상인 주요 원재료 확인 및 확인서 발급	수탁기업 (수급사업자)	정부 지원 100%	1,000개사 내외
연동약정 컨설팅	제도 교육, 연동 대상 요건 검토 및 기준지표 제안 등 연동 약정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	위탁·수탁기업 (원·수급사업자)		

* 주요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컨설팅중 택일하거나 모두 신청가능

신청·접수

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

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: 이메일

(접수처에 관련서류 제출)

접수납품대금연동제 누리집

(납품대금연동제.kr) 모집 공고문 참조

문의처

기관명	접수처	문의처
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	pis@win-win.or.kr	02-368-8962, 8929, 8939
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	aidenkim@innobiz.or.kr	031-628-9680
중소기업융합중앙회	wang407@k-saca.or.kr	042-331-0571, 0564
중소기업중앙회	pygyrom@kbiz.or.kr	02-2124-3206, 3207
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	kg24@mainbiz.or.kr	02-2230-2179